

# 2024년 제1회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방형직위(투자유치부장) 임용시험 공고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7일

##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분야 현황

임용직위	임용직급	임용인원 (임용기간*)	원소속	주요 업무내용
투자유치부장	▶ 일반임기제 (개방형4호) ▶ 지방서기관	1명 (2년)	부산시	▶ 국내·외 투자기업 유치 관련 업무 총괄 ▶ 국내·외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집행 ▶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

\* 임용기간 :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

### 2. 근거 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-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(대통령령)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- 「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
### 3. 임용조건

- 임용기간 : 2년(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)
- 보 수

임용등급	상한액	하한액	비 고
개방형4호	-	66,122천원	· 하한액 원칙 ·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·경력·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

※ 연봉 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- (민간인) 일반임기제공무원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하한액을 기본으로 하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(공무원) 경력직 공무원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름

#### ○ 신 분

- (민간인)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임용(근무)기간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
- (경력직 공무원) 전보, 승진,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

### 4. 응시자격 요건

#### 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
-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  - ※ 성별·주소지·연령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)
  - ※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

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#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####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나. 자격요건

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▷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

구 분		자 격 요 건
경력 요건	학 력 기 준	○ 석사학위 이하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.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○ 박사학위 소지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.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격증 기 준	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.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.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경 력 기 준	[공무원경력] ○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[민간경력]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.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실적요건		○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

※ 관련분야: 국내·외 투자유치·경제·경영·금융·국제통상·항만물류 등,  
첨단제조업·IT·BT·NT·R&D·관광레저사업 등 투자전략 수립, 투자심사분석, 투자홍보 및 관련분야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형식요건 심사

- 임용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확인

### 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 : 적격성 심사(서류심사+면접심사)

- 능력요건 :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 
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
- 특별요건 : ① 외국어 능력 ② 정보화 활용능력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 
활용능력, 데이터 활용능력 등)

※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**영어 프리젠테이션(7분이내)** 포함

※ 특별요건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등 제출

※ 외국어 능력의 경우, 면접 시 회화능력 검증 실시예정

## 6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발표	면접시험(예정)	합격자 발표(예정)
'24. 3. 27.(수) ~ 4. 8.(월)	'24. 4. 9.(화) ~ 4. 16.(화)	'24. 4. 22.(월)	'24. 4. 29.(월)	'24. 5. 3.(금)

※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,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자 등 확정 공고

## 7. 응시원서 교부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4. 9.(화) ~ 4. 16.(화) 18:00
- 원서교부 :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공고/고시)에서 다운로드
- 제출처 :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(5층)
- 제출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

※ 접수시간은 09:00 ~ 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요일·공휴일 접수 불가

###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

-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(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)  
(46757)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-26,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
-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(☎ 051-979-5042) 확인 후 발송
- ③ 「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」와 「반신용 봉투」를 반드시 동봉
-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## 8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,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
  -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재출한 응시원서로 같음
-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

## 9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연번	제출 서류	비 고
1	<b>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</b>	【별지 제1호】
2	<b>응시원서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응시수수료 : 5급이상 10,000원(부산시 수입증지) (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/ 정부 수입증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)</li> <li>▶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'<b>우체국 통상환증서</b>'로 대체</li> </ul>	【별지 제2호】
3	<b>이력서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</li> <li>▶ 증빙자료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</li> </ul>	【별지 제3호】
4	<b>자기소개서(A4 3매 이내) 1부</b>	【별지 제4호】
5	<b>직무수행계획서(A4 10매 내외, 요약서 2매 이내 첨부)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(PPT)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</li> </ul>	【별지 제5호】
6	<b>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(원본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박사 학위는 석·학사 학위,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</li> <li>▶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(공증 포함) 첨부</li> </ul>	
7	<b>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(담당자 성명, 연락처 기재)</b></li> <li>▶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 증명자료* 첨부 (*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증명 서류, 기타 등록증·허가증 등)</li> <li>▶ <b>근무부서·직책·담당업무·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</b></li> <li>▶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</li> <li>▶ 비정규직(비상근직)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</li> </ul>	
8	<b>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</li> <li>▶ <b>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</b></li> <li>▶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,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</li> </ul>	

연번	제출 서류	비 고
9	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	【별지 제6호】
10	<b>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생략가능</li> <li>▶ 주민등록초본 1부(전체주소 기입, 남자 병역사항 전체 포함)</li> </ul>	【별지 제7호】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연 번	제출 서류	비 고
1	<b>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 인정 (원서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)</li> <li>▶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	
2	<b>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면접시험일 기준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 유효</li> </ul>	
3	<b>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</li> </ul>	
4	<b>학위(연구)논문 사본·저서·특허·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&lt;자유서식&gt;</li> <li>▶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</li> </ul>	
5	<b>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A4 3매 이내</li> </ul>	

#### 다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「경력요건」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
-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전일(1일 8시간)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.  
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 : 졸업증명서)는 본인 희망 시 반환 가능합니다.



## 10. 기타 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,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고시/공고)에 게시합니다.
-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  - 응시관련 : 기획행정부 총무과(☎ 051-979-5042)
  - 직무관련 : 투자유치부 유치전략기획과(☎ 051-979-5221)